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57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현행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예탁자금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금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 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6. 9. 22 ~ 10.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기금”을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그 밖에 체육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명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u>지방재정법</u>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u>대전광역시</u>(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u>시 체육진흥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u>기금</u>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의 출연금</u> 2. ~ 3. (생략) <p>제3조(기금의 관리) <u>기금</u>은 <u>대전광역시</u> <u>기금관리기본조례</u>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u>기금</u>의 조성 관리 운용계획 수립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시체육회 사무처장·이사 및 가맹경기단체회장,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 <u>대전광역시</u> ----- <u>체육진흥기금</u>----- ----- -----</p> <p>제2조(기금의 조성) <u>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 1. <u>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u>----- 2.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관리) <u>기금</u>중 여유자금-- 「<u>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u>」 제8조----- ----- -----</p> <p>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u>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u>심의위원회</u>-- ----- ----- ②<u>위원장 및 부위원장</u>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u>위원</u>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그 밖에 체육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된다.</p> <p><u>제6조(위원회 기능)</u>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 	<p>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삭제)</p>
<p><u>제7조(회의)</u>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②~④ (생략)</p> <p><u>제9조(위원의 임기)</u>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②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u>제7조(회의)</u> ① 심의위원회-----</p> <p>-----</p> <p>②~④ (현행과 같음)</p> <p><u>제9조(위원의 임기)</u>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삭제)</p>
<p><u>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괄한다.</p> <p>② (생략)</p> <p><u>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u> ① 기금의 운용 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시체 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년도의 기금 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u>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u> ①-----</p> <p>심의위원회-----</p> <p>---</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u> ①-----</p> <p>-----</p> <p>-----</p> <p>-----</p> <p>심의위원회-----</p> <p>-----</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기금의 사용등)</u>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되 시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안에서 <u>위원회의</u>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p> <p>1. ~ 4. (생략)</p>	<p><u>제12조(기금의 사용 등)</u> ----- ----- ----- ----- ----- <u>심의위원회</u>----- ----- 1. ~ 4. (현행과 같음)</p>
<p><u>제14조(다른규정의 준용)</u> 기금의 집행은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u>(삭제)</u></p>
<p><u>제15조(결산 및 보고)</u> ①<u>기금운용관은</u> 매 회계년도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p> <p>②<u>시장은</u>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삭제)</u></p>

관련 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06년 11월 7일
 - 상정일자 :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7)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국장 박현오)

1. 제안이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협행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예탁자금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금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6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한봉전)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